제26차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연례회의
'22.05.08(일)-05..20(금), 세이셸

제26차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연례회의 참석 결과

2022. 05.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

Ⅰ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26차 IOTC 연례회의*,**

* 영문명 : 26th Session of the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 **제19차 이행위원회**(CoC19), **제19차 재정위원회**(SCAF19), **제5차 관리절차 기술위원회**(TCMP05) 동시 개최

□ 회의 목적

○ 2021년 회원국별 이행 사항 검토 및 열대 다랑어 자원회복 보존관리조치 개정에 대한 논의 등

□ 일시/장소 : '22.05.08.(일)~05.20.(금)*/ 빅토리아, 세이셸

* 사무국 현지 시간 기준:

CoC19 : 22.05.08(일)-05.10(화), 09:00-17:00 (보고서 채택: 22.05.12),
SCAF19 : 22.05.11(수)-05.12(목) 09:00-17:00,
TCMP05 : 22.05.13(금)-05.14(토), 15:00-19:00
S26 : 22.05.16(월)-05.20(금), 09:00-17:00

□ 참석자(약 100여명) : 한국, EU, 호주, 중국 등 (회원국 30개국), CNCP, NGOs 등

○ 한국 대표단

비고	기관 및 직위	이름
수석대표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심수빈
대체수석	해외수산협력센터 전문관	김수민
정부대표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	김승현
정부대표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	김태린
정부대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우리
자문	한국원양산업협회	최봉준
자문	한국원양산업협회	백상진
자문	한국원양산업협회	김태호
자문	동원 산업	정재훈
자문	동원 산업	조보람
자문	동원 산업	강승권
자문	동원 산업	김윤형
자문	동원 산업	황정훈
자문	동원 산업	강성준
자문	사조 산업	박진석
자문	사조 산업	추승현

□ 주요 의제

○ 황다랑어 자원 회복 계획에 관한 결의 개정

○ 가다랑어 어획통제규칙에 관한 결의 개정

○ FAD 관리 강화를 위한 논의

Ⅱ 주요 논의 결과

1 제19차 이행위원회[CoC19]

□ 국가 이행 사항 논의

[1] 결의 21/01 & 19/01에 따른 황다랑어 자원회복 계획 관련

ㅇ 19/01에 따라 중국의 황다랑어 어획량에 대한 이행 사항에 대하여 두 선단이 같이 고려되어 부분이행이라고 분류되었으나 사무국 또한 이에 대해 분명한 기준이 없어 "평가 없음(not assessed)" 으로 분류되길 이행위 차원에서 권고함

ㅇ 일부 CPC의 황다랑어 어획량 증가에 대해 다수 회원국 우려 표명함

[2] 결의 19/04에 대한 논의

ㅇ 어구 마킹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행을 하기 어려움 표명

ㅇ 등록 선박 중 선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CPC에 대해 사무국이 연락을 취하길 권고하였으며 허가 기간이 2년 이상 지난 선박을 제거하도록 이행위 차원에서 권고하였음

[3] 결의 12/04에 따른 바다거북 보존조치

ㅇ FAO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고 탬플릿을 준비하였으나 이것을 따르는 것이 의무인지 불확실하여 위원회에서 해석해주길 권고

[4] 기타 이행 사항

ㅇ 이행 보고서, 이행 질의, 피드백 서한 등 제시간에 제출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하여 문제점 언급하며 아직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제출 타임라인을 요청하였음

□ IUU어업에 대한 논의

ㅇ 잠정 IUU 목록

선박명	기국	IUU 이슈	주요의견
AVEMARIYA	IND	- 미허가 선박이며 어구마킹 부재 - 인도 정부의 등록된 선박이 아니라고 하나 선박에 인도 국기가 그려져 있음	- 인도의 피드백 부재로 18/03 결의 따라 자동으로 잠정 목록에 등록
LITTLESHA			
NOVA		- 미허가 선박이 협약 수역에서 어획하는 것 두 차례 발견	- (영국) 인도는 해당 선박에 제재를 가했다고 보고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협약 수역에서 다시 발견된 것을 확인하여 충분한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잠정 목록에 추가하길 요청
YONA			
MANGALA	LKA	- 영국과 프랑스령의 요청으로 목록 추가 논의 - 미등록 선박으로 IOTC 목표종 어획 - 프랑스령 EEZ 무단침입	- 스리랑카는 국내 규정을 강화시켜 해당 선박에 대한 제재 및 재판 등 진행 중에 있음 어필 - (영국) 스리랑카의 국내 제재 노력을 반영 목록에 등록 불필요 - (프랑스령) 18/03 14c. 14d에 따라 목록에 포함되길 요청 - 위원회 결정 요청
ISRAR1	OMN	- ICCAT IUU목록에서 교차 등록 논의 - 선박 이전 소유주와 현재 소유주간의 무관함 설명 부족	- (오만) 소유주 간 관계 설명 충분히 제공하였기 때문에 IUU 목록 추가 반대 - (EU) 결의18/03의 14항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음. 서류 위조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음. 두 소유주 간의 무관함 설명하는데 오만이 좀 더 노력해주길 바람
ISRAR2			
ISRAR3			
KM.SAMUDERA PASIFIK No.18	IDN	- ICCAT IUU 목록의 교차목록에서 제거 요청	- (EU) ICCAT에서 목록 제거 논의가 완료된 후 IOTC에서 논의 할 것
HONGDONG FISHERY12	PNM	- 파나마 기국 선박으로 알려졌으나 파나마는 이를 부인함	- IMO 목록 등에는 아직 파나마 기국 선박으로 등록되어있음 - 사무국은 이를 IMO와 파나마와 확인하도록 할 것 - 회기간 작업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2023년 IUU 목록에 추가될 것
LEXMAR009			

2 제19차 재정위원회 [SCAF19]

□ 2023년 예산안

ㅇ 인도네시아와 코모로 등 개발도상국이 증가하는 예산안에 불만을 표명하여 과학적 조사 등에 대한 예산 삭감을 통해 예산안을 조정하여 작년 대비 1% 증가하여 2023년 총 예산안 $4,109,745

- 중간보고서를 통해 2023년 과학조사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한지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해주길 사무국 당부함

□ 2021년 미납 분담금에 대한 논의

ㅇ 2021년 기준 미납 분담금 중 이란의 미납금이 48% 차지함

- 이란이 관련 국가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현재 경제 제재로 인해 달러로 교환하는 것 어려움 있어 이란FAO 사무소와 사무국 통해 미납금 지불하길 희망

ㅇ 재정위는 지속적으로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드백이 없는 국가들(예멘, 수단)의 미납액을 계속 표기해야하며 이들이 회원국 자격이 아닌 CNCP 자격으로 변경할지에 대해 IOTC 의장이 서한을 작성하여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길 권고하였음

3 제26차 IOTC 연례회의 [S26]

□ 보존관리조치 개정 논의

(1) 황다랑어 회복계획 보존조치 논의

ㅇ (논의 배경) 결의를 반대하는 6개국*의 지속적인 어획량 증가(50%)로 모든 회원국의 자원량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불가피해짐

* 인도네시아, 인도, 이란, 마다가스카, 오만, 소말리아

ㅇ (논의 내용)

<table>
<tr><th>번호</th><th>주요 내용</th></tr>
<tr><td>1</td><td>- 회의 전 몰디브와 EU 제안서 제출
<table>
<tr><th>몰디브</th><th>EU</th></tr>
<tr><td>(어획제한)
- ‘14년 어획량 또는 ’17-‘19년 평균 어획량 5,000t 이상
▪ (선진국) 21% → 40%
▪ (개도국) 12% → 27%
▪ (최빈국) 10% → 22%
- ’14년 어획량 5,000t 이상 & ‘17-’19년 평균 어획량 10,000t 이하인 원양조업국 : 13% (우리나라 변경없음)
- ‘14년 어획량 5,000t 미만 & ’17년-‘19년 평균 어획량 2,000t 이상 5,000t 이하
▪ (선진국) 0% → 15%
▪ (개도국) 0% → 6%
▪ (최빈국) 0% → 5%
- ’14년 어획량 5,000t 이하 & ‘17-’19년 평균 어획량 2,000t 이하: 어획한도 2000t → 1000t

(FAD 금어기)
- 3개월(7-9월)
- FAD 금어기 15일 전부터 FAD 투척 금지
- FAD 금어기 간 DFAD 인근 5마일 내에서 작업 금지(선망선, 지원선, 공급선)</td><td>(하부위원회 신설)
- 황다랑어 관련 하부위원회 신설하여 23‘년 개정 대비하며 논의사항(Terms of Reference) 마련

(동료 평가)
- 황다랑어 자원평가에 대한 독립적 동료 평가를 수행</td></tr>
</table></td></tr>
<tr><td>2</td><td>(몰디브 제안서 논의)
- (EU 등) 21/01 결의를 반대한 6개국이 제안서를 찬성하지 않는 한 감축에 대한 논의 무의미함 어필
- (인도네시아) 사무국과 인도네시아 간 데이터 차이 문제로 TAC 설정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어필하였으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황다랑어 어획제한 결의를 지지할 수 없음 주장
- 다수 반대 국가의 경우 대부분 영세어업의 형태의 어업인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국</td></tr>
</table>

	가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며 개발도상국이 어획을 제한하는 개념 자체를 반대함 - 소말리아의 경우 TAC 설정 기준 자체를 불신함
3	(EU 제안서) - 남아공 등 하부위원회가 황다랑어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제한시킬 것을 우려하여 하부위원회보다는 특별 세션이나 작업반 형태를 지지하였음
4	**(몰디브 제안서 수정)** - FAD 금어기 삭제 (잘못 들어간 내용임) **주요 내용** **(어획 제한)** - '14년 어획량 어획량 5,000t 이상 ▪ (선진국) 21% → 40% ▪ (개도국) 12% → 27% ▪ (최빈국) 10% → 22% - '14년 어획량 5,000t 이상 & '17-'19년 평균 어획량 10,000t 이하인 원양조업국 : 26% - '14년 어획량 5,000t 미만 & '17년-'19년 평균 어획량 2,000t 이상 5,000t 이하 ▪ (선진국) 0% → 15% ('17-'19년 중 최고어획량) ▪ (개도국) 0% → 6% ('17-'19년 중 최고어획량) ▪ (최빈국) 0% → 5% ('17-'19년 중 최고어획량) - '14년 어획량 5,000t 이하 & '17-'19년 평균 어획량 5,000t 이하: 2014년 어획량 기준 40% 감축 ▪ (연안개도국) 12% → 27% ('17-'19년 평균) ▪ (최빈국) 10% → 22% ('17-'19년 평균 또는 '18년 중 높은 것) - '14년 어획량 5,000t 이하 및 '17-'19년 평균 어획량 2,000t인 경우 개별 CPC는 총 2,000t을 넘지 않으며 해당 국가들의 총합이 13,000t을 넘지 않음
5	**(논의 결과)** - 6개의 반대 국가들의 지속적인 반대 및 협상 의지 부족으로 제안서 **철회**함

(2) 대형 어선 전재 프로그램 보존관리조치(21/02) 개정 논의

○ (논의 배경)

- ICCAT의 선례를 따라 전재 활동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급 신고서'를 도입하는 등 관련하여 일본이 제안서를 제출

- 인도네시아의 목재 운반선의 추가 전재 허용을 위한 개정안 제출

- 한국은 조업선 간 전재를 위한 부속서 개정을 제안하였음

○ **(논의 내용)**

- **(일본 제안서)** 영국과 EU 등 전재활동 규제 강화에 대하여 중요성 인지하며 일본의 제안서 지지하였음

- **(인도네시아 제안서)** EU는 인도네시아의 목재 선박의 추가 전재 요청 제안서에 대해 지속적으로 선박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우려 표명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선박간의 전재로만 한정시킬 수 있도록 제안서 수정 요청하였음

- **(한국 제안서)** 영국과 EU는 한국이 제안한 문구로 인하여 IUU 어업 활동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지지할 수 없음 표명

  ■ 연승선간 전재시 선박 검색을 의무화하고 사무국에 보고하는 등 규정을 강화시켜 위원회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IUU 어업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 시킬 수 없어 지지를 얻을 수 없었음

(3) 눈다랑어 MP 제안서

○ **(논의 배경)** 2011년부터 논의되어왔던 관리전략평가(MSE) 개발 및 수립의 작업 계획에 따라 2022년 위원회는 TCMP가 제안한 관리절차(Management Procedure, MP) 옵션 중 선택할 것을 고려해야하며

- 2021년 과학위에서 눈다랑어 MP에 대한 기술적 작업이 충분히 진행됨에 동의하였으며 위원회에 눈다랑어 자원량의 MP를 선택할 것을 알림

○ **(논의 결과)** 과학위 및 TCMP에서 제시한 옵션 MP1, MP2 모델의 자원량 회복 차이 및 눈다랑어 산란자원량이 목표기준점을 도달할 가능성 60% 또는 70% 모두 비슷한 결과를 예상하고있어 큰 반대없이 MP1의 60% 가능성 모델이 채택됨

(4) 가다랑어 보존관리조치 개정 논의

○ (논의 배경) 가다랑어 자원량 관리를 위해 설정된 어획통제규칙에 따르면 21-23년 총어획량은 513,572톤이나 지속적으로 초과어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어획 제한이 불가피해짐

○ (논의 내용)

<table>
<tr><th></th><th>주요 내용</th></tr>
<tr><td>1</td><td>
○ 회의 전 몰디브, EU가 가다랑어 어획량 감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함
<table>
<tr><th>몰디브</th><th>EU</th></tr>
<tr><td>
(어획한도)
<table>
<tr><th colspan="2">분류</th><th>감축률
('20년 대비)</th></tr>
<tr><td rowspan="3">'20년 어획량
50,000t 이상</td><td>원양조업국</td><td>20%</td></tr>
<tr><td>개발도상연안국</td><td>10%</td></tr>
<tr><td>소도서개발도상국
최빈국</td><td>4%</td></tr>
<tr><td rowspan="3">'20년 어획량
20,000t
~50,000t</td><td>원양조업국</td><td>10%</td></tr>
<tr><td>개발도상연안국</td><td>5%</td></tr>
<tr><td>소도서개발도상국
최빈국</td><td>2%</td></tr>
<tr><td rowspan="3">'20년 어획량
10,000t
~20,000t</td><td>원양조업국</td><td>5%</td></tr>
<tr><td>개발도상연안국</td><td>2%</td></tr>
<tr><td>소도서개발도상국
최빈국</td><td>1%</td></tr>
<tr><td rowspan="3">'20년 어획량
5,000t
~10,000t</td><td>원양조업국</td><td>3%</td></tr>
<tr><td>개발도상연안국</td><td>2%</td></tr>
<tr><td>소도서개발도상국
최빈국</td><td>1%</td></tr>
<tr><td colspan="2">'20년 어획량 5,000t 이하</td><td>800t 혹은 '20년 어획량
중 높은 어획량 이상
어획금지</td></tr>
</table>
</td><td>
(총 연간 한도)
- '20년 어획량이 어획한도 1%를 초과하는 국가는 '23년에 어획량 감축
<table>
<tr><th>CPCs</th><th>감축분 (Mt)</th></tr>
<tr><td>EU</td><td>108.930</td></tr>
<tr><td>인도네시아</td><td>114.186</td></tr>
<tr><td>인도</td><td>17.852</td></tr>
<tr><td>이란</td><td>40.997</td></tr>
<tr><td>한국</td><td>9.898</td></tr>
<tr><td>몰디브</td><td>95.659</td></tr>
<tr><td>모리셔스</td><td>8.492</td></tr>
<tr><td>세이셸</td><td>69.518</td></tr>
<tr><td>스리랑카</td><td>34.707</td></tr>
</table>
</td></tr>
</table>
</td></tr>
<tr><td>2</td><td>
- (한국) '21-'23년도 기준을 위한 감축량임을 감안하여 21년도 어획량도 포함되어야함을 어필하였음
- 인도와 이란은 어획 제한이 부과되는 것에 대하여 모두 반대하였음
- (EU) 몰디브 제안서에 따라 EU에게 부과되는 높은 감축률에 불만을 표현하였음
- 다수 연안개발도상국들은 몰디브의 제안서에 대해 연안개발국 및 SIDS가 감축 대상이 되는 것에 불만을 표현하였음
- EU와 몰디브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각각 수정 제안서를 제출하여 논의를 지속시킴
</td></tr>
</table>

<table>
<tr><td>3</td><td>

○ 수정 제안서

<table>
<tr><th>몰디브</th><th>EU</th></tr>
<tr><td>

(어획한도)

<table>
<tr><th colspan="2">분류</th><th>감축률
('20년 대비)</th></tr>
<tr><td rowspan="3">'20년 어획량
50,000t 이상</td><td>원양조업국</td><td>14%</td></tr>
<tr><td>개발도상연안국</td><td>9%</td></tr>
<tr><td>소도서개발도상국
최빈국</td><td>5%</td></tr>
<tr><td rowspan="3">'20년 어획량
20,000t
~50,000t</td><td>원양조업국</td><td>10%</td></tr>
<tr><td>개발도상연안국</td><td>5%</td></tr>
<tr><td>소도서개발도상국
최빈국</td><td>2%</td></tr>
<tr><td rowspan="3">'20년 어획량
10,000t
~20,000t</td><td>원양조업국</td><td>5%</td></tr>
<tr><td>개발도상연안국</td><td>2%</td></tr>
<tr><td>소도서개발도상국
최빈국</td><td>1%</td></tr>
<tr><td rowspan="3">'20년 어획량
5,000t
~10,000t</td><td>원양조업국</td><td rowspan="3">'19-'20년 평균 어획량 또는 20년 어획량을 초과하지 않음</td></tr>
<tr><td>개발도상연안국</td></tr>
<tr><td>소도서개발도상국
최빈국</td></tr>
<tr><td colspan="2">'20년 어획량 5,000t 이하</td><td>4,000t 또는 20년도 어획량을 넘지 않으며 해당 국가들의 총 어획량이 24,000t을 초과하지 않음</td></tr>
</table>

</td><td>

(총 연간 한도)
- '20년 어획량이 어획한도 1%를 초과하는 국가는 '23년에 어획량 감축
▪ 80,000t 이상 → 9% 감축
▪ 30,000t 이상 80,000t 이하 → 6% 감축
▪ **30,000t 이하 → 4% 감축 (한국)**

<table>
<tr><th>CPCs</th><th>감축분 (Mt)</th></tr>
<tr><td>EU</td><td>107,635</td></tr>
<tr><td>인도네시아</td><td>105,669</td></tr>
<tr><td>인도</td><td>18,610</td></tr>
<tr><td>이란</td><td>41,845</td></tr>
<tr><td>**한국**</td><td>**10,318**</td></tr>
<tr><td>몰디브</td><td>94,522</td></tr>
<tr><td>모리셔스</td><td>8,852</td></tr>
<tr><td>세이셸</td><td>70,957</td></tr>
<tr><td>스리랑카</td><td>35,425</td></tr>
</table>

</td></tr>
</table>

</td></tr>
<tr><td>4</td><td>

- (한국) EU의 수정 제안서 기준 범위가 넓음 20,000-30,000t 그리고 그 이하도 추가해야 함 어필
- (인도, 이란) 개발도상국에게 어획 제한 시키는 것 반대함
- (EU) 몰디브의 제안서에 대한 감축률 반대함
- (몰디브) EU 제안서의 새로운 감축 기준 과학적 기준이 없어 지지할 수 없음
- 연안개발도상국 지속적으로 어획제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음

</td></tr>
<tr><td>5</td><td>

(논의결과)
- 이란, 인도의 반대 및 EU와 몰디브가 합의점을 도달하지 못하여 제안서 **철회함**

</td></tr>
</table>

[5] FAD 관리를 위한 보존관리조치(19/02) 개정을 위한 논의

○ (논의 배경) FAD 어업으로 인한 황다랑어 치어 사망률의 증가로 FAD 관리가 강화 되어야하는 상황임

- 케냐가 FAD 금어기, DFAD 등록부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24분 늦어 제안서 형태로 논의할 수 없게됨

- 케냐가 제안한 부분은 조사 보고서(Working paper) 형태로 재제출하여 EU의 제안서에 추가되어 논의될 수 있도록 합의하였음

○ (논의 내용)

<table>
<tr><th></th><th>주요 내용</th></tr>
<tr><td>1</td><td>
<table>
<tr><th>EU</th><th>케냐 등</th></tr>
<tr><td>
(DFAD 한도)
<table>
<tr><th></th><th>기존</th><th></th><th>수정 제안</th></tr>
<tr><td>한번에 작동가능한 최대 부이</td><td>300개</td><td>➔</td><td>2023.1.1. 이후 280개
2025.1.1. 이후 260개</td></tr>
<tr><td>선망선이 매년 획득할 수 있는 최대 부이</td><td>500개</td><td>➔</td><td>한번에 작동 가능한 최대 부이의 2배를 넘지 않아야 함
2023.1.1. 이후 560개
2025.1.1. 이후 520개</td></tr>
</table>
(생분해성)
<table>
<tr><th>분류</th><th>생분해정도</th></tr>
<tr><td>카테고리 Ⅰ</td><td>계측부이에 사용되는 재료를 제외하고는 FAD의 모든 부분(뗏목, tail, 부유 요소)이 생분해성 재료로 만들어짐</td></tr>
<tr><td>카테고리 Ⅱ</td><td>부유 요소와 계측부이를 제외한 모든 요소가 생분해가능</td></tr>
<tr><td>카테고리 Ⅲ</td><td>tail. 기타 매달린 부분은 생분해가능 뗏목은 생분해되지 않는 재료</td></tr>
<tr><td>카테고리 Ⅳ</td><td>FAD의 모든 부분이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분해되지 않는 재료로 사용</td></tr>
</table>
- 카테고리 Ⅰ, Ⅱ, Ⅲ의 DFAD만 사용하며 카테고리 Ⅳ DFAD 배치 불가, ‘25.1.1일부터 Ⅰ과 Ⅱ의 DFAD만 사용할 것
- 카테고리 Ⅰ의 DFAD를 사용하는 선박은 최대 부이 한도 10%를 더하여 배치 가능
</td><td>
(DFAD 등록부)
- FAD 사용 승인 받은 선망선에 대하여 FAD 정보를 전산에 제출할 것
- FAD 등록부에 등록하지 않은 부이는 보유를 금지할 것

(DFAD 개수)
- 한번에 최대 150개 초과 금지하고 각 국은 자국의 DFAD 개수를 발표 할 것

(FAD 금어기)
- FAD 금어기 15일 전부터 FAD 투척 금지하며 FAD 금어기 간 DFAD 인근 5마일 내에서 작업 금지함

(DFAD 모니터링)
- 위원회는 FAD 개수 이행을 원활히 감시하기 위하여 DFAD-MS를 2023년 1월 1일까지 수립할 것
- 각 국은 DFAD 위치를 DFAD-MS에 실시간으로 보고하도록 할 것(6시간 단위)

(공급·지원선)
- ‘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지원선을 운영을 줄이고 연간 보고서에 감축 현황을 포함시킬 것. ’22년 12월 31일 이후 공급·지원선 운영을 금지함
</td></tr>
</table>
</td></tr>
<tr><td>2</td><td>- (케냐, 남아공 등) FAD 금어기 필요성 강력하게 주장함
- (세이셸, 모리셔스 및 기타 조업국가) FAD 금어기 반대
- (한국) 생분해성 카테고리를 2026년부터 적용하길 요청</td></tr>
<tr><td>3</td><td>(논의 결과)
- EU와 케냐가 지속적으로 합의를 거쳐 EU가 DFAD 등록부 및 DFAD 감축을 추가한 수정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FAD 금어기를 추가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케냐와 남아공 등 연안개발 도상국이 제안서를 반대하였음
- (몰디브, 말레이시아) DFAD와 AFAD 관리가 구별되어야하며 그러한 이유로 보존관리 조치가 각각 만들어져 채택해야한다고 주장하여 제안서 반대함</td></tr>
</table>

□ IUU 목록 설정

선박명	기국	IUU 이슈	결과
AVEMARIYA	IND	- 미허가 선박이며 어구마킹 부재 - 인도 정부의 등록된 선박이 아니라고 하나 선박에 인도 국기가 그려져 있음 - 해당 국가 소명 부족	- 목록 추가
LITTLESHA			
NOVA			
YONA		- 미허가 선박이 협약 수역에서 어획하는 것 두 차례 발견	- 목록 추가
MANGALA	LKA	- 미등록 선박으로 IOTC 목표종 어획 - 프랑스령 EEZ 무단침입 - 스리랑카 국내적 재판 아직 진행 중	- 목록 추가
ISRAR1	OMN	- ICCAT IUU목록에서 교차 등록 논의 - 선박 이전 소유주와 현재 소유주간의 무관함 설명 부족	- 목록 추가
ISRAR2			
ISRAR3			

□ 협력적 비회원국(CNCP) 자격 관련 논의

ㅇ 라이베리아 CNCP 자격 신청하였음

ㅇ (일본) 전재 활동을 활발히 하는 파나마의 경우 CNCP 자격도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행 관련 질의를 위해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협약 수역 관리가 어려움 표명하였으며

- 이에 대하여 사무국이 파나마가 최소 CNCP 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는 방안 제안하였음

□ 기타 논의 사항

[1] 향후 연례회의 일정 및 개최국

날짜(안)	개최국
2023년 4월30일-5월 12일	모리셔스
2024년	태국

[2] 의장 부의장 선출

ㅇ 이행 위원회

의장	Indra Jaya (Indonesia) - 2024년 연례회의까지
부의장	Zahar El Kharousy (Tanzania) - 2024년 연례회의까지